요양보호사(재가.시설)전문직업배상책임보험
계약관련 주요사항

1. 보험료의 납입 및 회사의 보장개시 : 보험계약의 효력은 보험회사(이하 회사)가 보험료 (제1회 보험료)등을 받은때부터 발생하며 피보험자의 추가등으로 인한 추징보험료 발생시 계약자는 해당보험료를 즉시 납입하여야 합니다.

2. 피보험자명단 변경 통보 : 계약자는 피보험자의 추가 또는 해지등의 사유가 발생시 회사에 즉각 변경내용을 통보 하여야 하며 통보시점 이전으로 소급변경은 불가 합니다

3. 친족에 입힌 손해에 대한 부담보 : 피보험자의 친족(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에게 입힌 손해는 절대적으로 보상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당해 사고의 피해자가 피보험자의 친족에 해당하는 한, 피해자와 직접적 가해 행위자 간의 친족 관계 여부를 불문하고 이를 보상하지 않습니다.

4. 배상청구기준 및 보고연장기간 : 피보험자가 유효한 증권에 가입되어 있는 기간중에 배상청구(사고통보)를 하여야 하며, 피보험자의 보험기간이 이미 종료 또는 해지 되었다 하더라도 보험기간 내에 발생한 사고를 당해 계약의 만기일 또는 해지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보험회사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피보험자가 보험 효력의 공백 없이 기존의 보험회사 또는 다른 보험회사에 동종의 배상청구기준 계약을 재체결한 경우에는 보고연장기간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5. 의무보험(타보험)과의 관계 : 법률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공제포함)에서 보상하는 금액을 초과할때에 한하여 그 초과액만을 보상합니다

교부	설명

본인(계약자)은 상기의 계약관련 주요사항을 (교부)받고 (설명)을 들었음.

↑직접기재 ↑직접기재

20 25년 6월 16일

보험계약자 및 담당자 **기관명** 복동 온누리 노인 복지 시설 (인) 또는 서명

고유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686 80 02901 ↑ 참인